

대구지방법원 2021. 3. 5 선고 2020가단13578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1. 2. 19

판결 선고 2021. 3. 5

주 문

- 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20.3. 31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. 6. 9. 접수 제91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- 원고의 주장

가. 소외 주식회사 D은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에 2017 차전 1358호로 대여금 6,699,848원과 그 중 6,266,533원에 대하여 2017. 7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9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47,300원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그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추심을 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소외D의 소외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.

다. 피고는 위 C의 모친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.

라.사해행위1) 소외 E의 사망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위 C의 부친인 소외 파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)이 사망하게 되었고,망인의 처 인 피고가 7분의 3, 망인의 자녀들인 위 C과 소외 F가 각 7분의 2지분 비율로 망인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.

2) 위 C의 무자력

위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다.

3)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위 C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 여 피고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명 의로 전부 이전하였다.

4)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

무자력자인 위 C으로부터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의 7분의 2지분을 이전받은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.

따라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 여 2020. 3. 31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피고는 위 C에게 별지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0. 6. 9. 접수 제 91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 구에 이른 것이다.

2. 판 단

갑제1호증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 고가 주장하는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신종화

별지